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사 건 19진정0348500 훈련병 삭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공군교육사령관

### 주 문

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훈련병 등에게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으나,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피해자를 삭발시켰다. 이는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선을 원한다.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군인의 두발과 관련된 근거규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인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군은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공군규정 2-44, 이하 ‘공군규정’이라 한다)을 통해 신분별 두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본군사교육의 피교육자의 경우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 및 이에 필요한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피교육생의 두발의 상태는 각 교육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전 교육생을 상대로 일정한 길이의 두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군사훈련 중 교육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신속히 식별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주된 이유가 있다. 특히, 매 기수별 약 1,400여 명의 건강상태를 제한된 인원의 교관들이 일일이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두발의 길이를 일반장병보다 짧은 길이로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1,4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내에 주어진 군사 및 교육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생 개개인에게 개인위생점검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자칫 단체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개인위생관리의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생의 두발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발인력 1명이 쉬는 시간 없이 하루에 70명 이상을 조발하여야 하고, 장비 과열 및 이발 인력 피로도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발의 방법으로는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요구되는 교육생의 두발형태를 만들 수 없고, 이에 부득이 소위 '삭발' 정도의 짧은 머리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발은 원칙적으로 교육생들이 처음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한 입영 1주차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교육생으로서의 두발상태를 유지하고 신규부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수료 직전에 다시 한 번 이발을 실시하고 있다.

#### 다. 참고인(기본군사훈련단 지원대대)

'삭발형 두발'의 경우 머리를 자르는 데에만 1명당 6분 정도 걸리고, 준비, 이동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1명당 10분이 걸린다. 반면, '스포츠형 두발'의 경우는 1명당 20분이 걸리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스포츠형 두발'의 경우가 '삭발형 두발'의 경우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린다.

###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현장 설문조사, 육군규정 및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훈련 지침서, 공군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들어온 훈련생은 병 훈련생(이하 훈련병), 부사관 훈련생, 장교 훈련생으로 구분되며, 기본군사훈련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1주차 초기에 불임1 사진과 같이 남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형태(불임1)의 이발을 실시한다.

나. 2019. 11. 현재 육군훈련소 및 해군교육사령부의 경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붙임2 사진과 같이 3cm 이하의 '스포츠형' 이발을 실시한다.

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의 이발담당 인력은 병사 8명과 군무원 8명, 총 16명이다.

라. 2019. 10. 기준 훈련병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입단은 연간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회당 1,000명~1,600명 정도가 2개 대대로 나누어 입단한다. 부사관 및 장교 훈련생의 경우는 1년에 2차수이고, 회당 300명~400명이 입단한다.

마. 위원회가 2019. 10. 7.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65.7%가 1주차 입소 직후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에 대하여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스포츠형 머리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방탄모(헬멧)의 경우 안쪽이 오염되어 있어, 두피노출로 인한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 등을 유발함",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임" 등이 있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부분 부동의 의견도 5.8% 있었는데, 그 이유는 "1주차는 괜찮지만, 4주차에도 시행되는 삭발은 동의하지 않는다", "머리 길이를 통일하기 위한 것은 인정하지만, 삭발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었다.

##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두발이나 복장과 같은 자신의 외관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한

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군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군인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발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권을 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군인은 기본권의 주체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적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군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괄 삭발형 이발을 실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육해공군이 모두 짧고 단정한 두발 길이를 군인의 외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평시 훈련은 물론이고 전시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두발 형태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더 나아가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피진정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피진정인은 기수당 천명이 넘는 훈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삭발 형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군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욱 큰 규모인 육군과 해군의 훈련소가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의 두발 형태를 삭발형으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삭발형 이발을 훈련생들이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종의 통과의례로 여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공군 훈련생들의 삭발이 특정 부대의 두발 형태처럼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긍할 여지도 있겠지만, 삭발이 공군의 전통이나 공군 장병 전체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도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생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거기에 어떤 공군 특유의 일체감이나 자부심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삭발을 통하여 훈련생들에게 군인정신을 함양한다는 피진정인의 의도 역시 훈련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훈련생들의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음에도 관리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관련 관행의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응

(붙임1)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 이발 후 사진



(붙임2) 국군훈련소 두발 사진



## <별지>

### 관련규정

####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 3.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 ② 가발 착용이나 머리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4. 공군규정 2-44 ,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

제38조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 가. 간부 표준형: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
  - 나.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5.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① 간부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

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cm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 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영생활 통제기간 중인 부사관과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

## 6.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훈련지침서 제3절

- 가. 용모는 그 사람의 총괄적인 인격의 소산이다.
- 나. 두발과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